**땅의 사람들 동아리 회칙**

**제1장 총칙**

**제1조 [동아리 명칭]**

① 본 동아리의 명칭은 “땅의 사람들”로 한다.

**제2조 [목적]**

①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로서 농촌 사회의 발전을 도모한다.

**제3조 [동아리 소재]**

① 본 동아리의 소재지는 숭실대학교 동아리 연합회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.

**제2장 임원진 및 집행부**

**제1조 [임원진의 임기]**

① 임원진은 회장, 부회장, 기획부장, 문화부장, 복지부장, 사무부장, 홍보부장으로 정의한다.

② 임원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**제2조 [임원진 선출 방식]**

① 회장단은 전 임원진의 회의를 통해 선출된다.   
② 부장단은 현 회장, 부회장의 회의로 의해 선출된다.

**제3조 [임원진]**

① 회장은 동아리 내의 모든 최종 결정과 동아리원들의 인적사항 관리, 행사의 시행 유무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 업무 보조 및 동아리 내부 행정을 수행한다.

③ 부장단은 각 부서의 업무(장소 대관, 회계, 홍보물 제작 등) 및 행사 집행을 수행한다.

**제4조 [집행부]**

① 집행부는 임원진으로만 구성한다.

**제5조 [집행부 회의]**

① 집행부 회의는 월 1회 이상 진행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긴급 소집을 통해 추가적인 결정 사항들을 의논한다.

② 회의 결과 및 예정 행사는 모두 동아리 공지방에 공지하도록 한다.

**제3장 회원**

**제1조 [회원 자격 및 의무]**

① 회원은 활동 회원과 비활동 회원으로 구분된다.

② 동아리 활동 회원은 현재 숭실대학교를 재학 중이며 회비 납부가 완료된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.

③ 동아리 비활동 회원은 군 휴학 또는 일반 휴학, 졸업 유예 등 숭실대학교를 휴학한 휴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

④ 동아리 활동 회원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시 비활동 회원으로 간주한다.

⑤ 모든 동아리 회원들은 임원진의 공지에 맞춰 활동을 하고 이의 사항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.

**제2조 [회원의 가입]**

① 본 동아리의 회원 가입은 동아리 모집 기간에 신청 양식에 맞춰 지원한 사람들로 한다.

② 추가 가입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회장이 재정과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

**제3조 [회원의 탈퇴]**

①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회장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동아리 공지방을 나가는 것으로 탈퇴 처리가 된다.

**제4장 회의**

**제1조 [정기 모임]**

① 본 동아리는 월 1번씩 주기적으로 정기 모임을 하여 앞으로 다가올 행사나 동아리의 개선안 등 동아리에 대한 회의와 전국의 농촌 문제에 대한 토론과 고찰을 한다.

**제2조 [총회]**

① 본 동아리는 1년에 두 번 이상 총회를 진행하여 신규 부원 소개 및 동아리 오리엔테이션, 건의 사항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.

**제 5장 재정**

**제1조 [수입]**

① 동아리의 수입은 회비로 정해지며, 이는 본 동아리의 활동비로 사용된다.

**제2조 [회비]**

① 본 동아리의 모든 회원은 반드시 집행부가 지정하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
**제3조 [결산보고]**

① 회장은 총회에서 당 학기의 결산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.

② 회비를 사용한 이후 반드시 회계 내역을 공지방에 공개한다.

③ 동아리 회원은 공개된 회계 내역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.

**제6장 동아리 등록**

**제1조 [등록]**

① 동아리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동아리 연합회 회칙에 따른다.

**제7장 부칙**

**제1조 [회칙 발효]**

① 각 개정안의 개정 회칙은 다음 개정일부터 시행한다.

초안 [2020.04.01]

개정안 [2023.03.30]

**제2조 [회칙 개정]**

① 본 동아리의 회칙은 총회에서 회원의 투표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어야 가능하다.